

고 발 장

고발인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표고발인

2.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대표고발인

3. 이

고발인들의 대리인 별지목록

피고발인

1. 이 前 국가정보원장

2. 한 前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

3. 이 前 국가정보원장

4. 서 現 국가정보원장

5. 이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6. 신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7. 이 現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8.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9. 최

10. 홍

11. 김

12. 유

13. 박

14. 이

15.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직원

위 피고발인 1 내지 15의 직장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 및 피고발인 9, 15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 라고 합니다)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이라고 합니다) 소속 단체들의 대표자들로서, 위 대책위는 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인권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연대조직입니다. 또한 위 국

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국정원 개혁을 본질적인 활동으로 삼고 있던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3은 전 국가정보원장이고, 피고발인4는 현 국가정보원장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피고발인5 내지 피고발인7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며, 피고발인8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피고발인9 내지 피고발인15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소속 직원들로 이 사건 정보원에 대한 담당 수사관 또는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 등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15는 이 사건 제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한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입니다.

II. 고발 배경

2019. 9. 24. 국감넷은 소위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책위 출범을 공식화 했습니다(증 제1호증 진상조사 보고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이라고 합니다)이 2014.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약 5년 동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소위 ‘김대표’ (, 이하 ‘이 사건 제보자’ 라고 합니다)를 ‘프락치’ 로 이용

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증 제2호증의1 내지 5 참조).

위 기사들이 게재되자 국정원은 이 사건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안”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가 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증 제3호증, 증 제4호증의1 내지 3 참조).

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 자체를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의 협조 하에 2019. 9. 5., 2019. 9. 9., 2019. 9. 10. 3 일에 걸쳐 질의 및 응답하는 방식으로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은 녹음하고 녹음된 대로 녹취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증 제1호증 참조).

Ⅲ. 이 사건 경위

1.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접근 및 포섭

이 사건 제보자는 2006년경 하던 중 군대에 입대한 사람으로,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학생운동 하던 장병들은 자진 신고하라’는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 합니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 점’을 기무사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국정

원은 기무사와 함께 이 사건 제보자의 학생운동 행적 및 함께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가 제대한 후인 2014. 10.경, 피고발인9 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을 유지하는지, 근황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이들에게 부담스럽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1~2주 간격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동향을 알려주면 보상을 하겠다’ 며 돈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제보자는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국정원과 알고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술을 강권하며 사업에 협조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빛이 썩이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출산하게 된 이 사건 제보자는 2015. 4.경 국정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이 사건 제보자는 2015. 4.경부터 이른바 국정원의 ‘프락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활동을 ‘사업’으로 지칭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김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때부터 피고발인들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하

여 이미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사찰하라는 구체적이고 집요한 지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였을 당시 알고 지냈던 선배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고려대 민주동문회 주요 인사 연락망을 제공하며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찰 대상들의 대화에 등장하면 그 얘기를 잘 기억했다 보고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 4.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발인들의 지시로 약 1,5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였고, 국정원이 사찰대상으로 지목한 선배들과 함께 연구 활동이나 답사 활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사찰 대상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그 동향을 피고발인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가방에 든 녹음기와 ‘하이큐’ 라는 앱을 간 껌력시 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는 사찰 대상이었던 민간인들과 만나는 모든 자리에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녹음기를 소지하여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지급받은 장비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피고발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건네줄 때마다 이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세 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위 진술서 작성 횟수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후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확대되더니, 5년간 총합하여 100회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활동에 대한 대가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매달 기본급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매달 이 사건 제보자와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1-2주일에 1번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추가로 5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금융거래내역). 또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지방에 사찰 대상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미리 불러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술값은 모두 ‘법인카드’로 지불되었고, 그 이외의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제보자의 공익제보

이 사건 제보자는 약 5년간 피고발인들의 지시로 인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는 동안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지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안면 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고발인들에게 종속되는 바람에, 자신이 종전에 하고 있던 사업은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도 피고발인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질책만 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 제보자는 사찰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선배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자신을 도와주자, 죄책감을 느끼고 더 이상 불법적인 사찰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2019. 8. 23.경 그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문자메세지 내역 참조).

또한 2019. 8. 26.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하여 지난 5년 간 지속되었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내역을 폭로하고(증 제 2호증의1 내지 5 참조),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이하 ‘이 사건 공익제보’라 합니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IV.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에 관한 점

가. 적용법조

<p>국정원법</p> <p>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p> <p>① <u>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9조(직권남용죄) ① <u>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p> <p>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발인들의 직권의 남용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의 남용’ 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용’ 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2018도18646 판결 참조).

나) 피고발인들의 직무 범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한정됩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이번 사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 이라며, “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의 법상 직무이고, 내사 주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증 제3호증 참조).

따라서 국정원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공익제보의 내용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 점,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상

국정원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 직권의 남용

국정원은 이 사건 공익 제보에 대하여 ‘대공 수사’ 라는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직무 행위의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 남용’ 에 해당합니다.

(1) 피고발인들의 직무 행위의 목적

국정원의 ‘내사’ 라는 해명과 달리, 피고발인들은 사찰의 대상이 된 대상자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수사를 개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피고발인들은 종전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을 기획하여, RO라는 허위의 조직을 만들어내었던 수사팀인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직원들로, 이 사건 제보자에게 “경기 동부 RO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부고, 아직 잔당이 남아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 프락치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사찰 지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범죄의 혐의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 ‘할 수 있는’ 친구 000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인하

자.” 고 이 사건 제보자에게 프락치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작’ 을 염두에 둔 ‘기획’ 일 뿐이며, 이미 대법원 판결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RO’ 에 대하여 그 세력이 남아 활동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 단서도 없이, 탐색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여, 민간에 대한 정보를 위법 수집하였고,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소위 ‘RO사건’ 과 같이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수사라 할 것입니다.

(2) 불법적인 사찰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직무행위의 필요성 · 상당성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주체사상을 모르면 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며, 북한에서 만든 원서를 학습 교재로 직접 주체사상을 교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보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정작 자신이 감시한 사람들 입에서 주체사상이나, 그와 관련한 단어가 나온 적은 없었고, 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가 소멸할 위기에 있으니 지역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내용이 많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 받고, 이 사건 제보자가 통일경제포럼 등의 행사나 강연에 참여하여 녹취한 내용을 모두 파악한 바, 사찰 대상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과는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역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며, 이 사건 제보자에게 청년회 사무실 보증금까지 지원하면서 지역 사회 소멸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회

를 고향인 당진에서 만들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파악한 정보에 따르더라도, 통일경제포럼이나 지역 청년회가 하는 활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는 활동이었고,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하여 대상자들을 사찰하는 행위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

(가) 허위 진술서 작성 지시

이 사건 제보자가 1주에서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다시 써야 한다.” 며 진술 내용을 코치했고,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발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연기하듯이 미리 대본을 짜보고 그대로 진술서를 쓰고, 쓰다가 중간에 피고발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불법적인 사찰 도구 지급 및 직접적인 불법사찰 실행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소위 ‘RO 사건’의 프락치였던 이 사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때 썼던 제품이라며, 녹음기와 이를 숨길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하여 건넸습니다. 또한 녹음을 위해 ‘하이큐’ 라는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갤럭시 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의3 참조).

또한 피고발인들은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진주에서 생활하면서 통일경제포럼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다녀가던 사찰 피해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서울 신대방 쪽에 집을 마련하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와 함께 활동하던 최 O를 사찰하기 위하여, “방 안에 있는 화재감지기에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 O가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고 말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보자가 피고발인들에게 이에 대해 묻자 “우리가 설치했어도 김대표한테 설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김대표가 부자연스러울 테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만날 때마다 “***이 옷장에서 책을 꺼내 본다. 확인해봐라”, “***은 밤에 &&&를 한다.” 고 하는 등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사건 제보자에게 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17년 초경에 이르러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며, 이 사건 제보자에게 ‘통일경제포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볼 것을 지시하고,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구매해주는 한편 촬영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주었고, 인터뷰 내용을 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다큐를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경제포럼 이재봉 교수를 비롯하여 정당, 시민단체, 작가, 종교인 등을 촬영하였고, 이는 피고발인들에게 전달되어 영상파일을 포렌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7. 5. 18. ~ 5. 21.에 진행된 ‘통일경제포럼’의 회원 및 일반 신청인들이 참여하는 단둥기행에 피고발인들이 직접 동행하여, 기행팀이 묵

을 숙소의 맞은 편 숙소를 섭외하고, 사전에 촬영 장비를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일정 전체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는데, 2019. 2. 블라디보스톡 답사에서도 피고발인들이 동행하여 모든 참가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열람

한편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사찰할 사람을 지정해 주었는데, 이 중에는 제보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발인들은 국정원 경기지부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찰을 해야 할 대상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스트’를 검색하면 사진과 프로필, 성향 등 매우 많은 사적 정보가 담긴 화면이 현출되었고, 사진(증명사진 또는 활동 사진 등)과 약력, 과거 활동 등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였는데, 적어도 30~40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 제1호 증 참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을 보여주며 숙지시키고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증 제6호증 기사 참조), 이를 외우지 못하는 경우 피고발인들과 공유하던 이메일 () 로 리스트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에는 저명 정치인과 교수, 변호사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민주동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 ’ 의원의 ‘사찰리스트’를 검색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라) 불법적인 자금 지급 등 회유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가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 행위를 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수차례 불법 성매매 업소, 불법 안마시술소를 데리고 다니고, 이 사건 제보자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를 강압적으로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피고발인들의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돈으로 위법을 저질러가며 이 사건 제보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이 사건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압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 사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증언하면 RO 사건 제보자에게 준 10억 여원과 유사한 금액을 주겠다.” 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를 이용하여 일종의 RO사건과 유사한 조작 사건을 기획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람의 권리 행사 방해

이처럼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며,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사찰 피해자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았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본인과 사찰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공식적인 강연이나 답사뿐 아니라, 사적으로 고소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

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녹취하여 피고발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사생활의 비밀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대공 수사에 대한 직무를 집행하였고 주장하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전혀 없는 민간인들을 이용하여 조작 사건을 기획할 목적으로 정당한 직무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 피고발인들이 지시한 내사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적법한 내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발인들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 사건 무고·날조 등에 관한 점

가. 적용법조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 공익제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보자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를 날조하고, 사찰대상 피해자들을 무고하고자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에 해당합니다.

2015. 4. 사업을 수락하고 나서 이 사건 제보자가 한 첫 번째 일은 서산에 있는 캠핑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친구 최 이용하여 소위 ‘그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고려대 출신 혁명가’라는 가공의 인물이

이 사건 제보자를 지하혁명조직으로 끌어들이 것처럼 관련 증거를 날조하였습니
다. ‘ 이 소개시켜 준 이름 모를 고려대 출신 혁명가가 와서 총화를 하
고’ 이 사건 제보자가 조직원이 되는 것으로 기획한 뒤, 캠핑장에 소화기 모양
의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제보자에게 위 000을 방과제로 유인하여, 대화를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최 이 소개시켜 준
B대 출신의 지하혁명조직원이 총화를 하고, 제보자는 그 조직원이 되었으며, 위
지하혁명조직원은 총화를 하고 중국으로 밀항하려 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진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진술서 상 이 사건 제보자가 친구인 과 이동하
는 장면은 친구가 제보자에게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서울대 고려대 지하혁명조직” 이라는 이름의 조직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다” 고 기재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자인 위 최 이 공군관련 취재를 마친 후 인
근에 있던 이 사건 제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상황에서도, 대화녹음을 지시하
고 위 최우영이 작성한 기사를 데스크에 송고하는 행위 또한 “기자로 활동하면
서 군사정보를 빼내어 조직 윗선에 보고” 하는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하게 하였
습니다.

또한 전술한 통일경제포럼의 단둥기행에서도 일정 마지막 날 단둥역에서
일행 중 3명이 함께 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1명이 역 밖에 서서 담배를 피는 장
면이 촬영된 영상을 “한명이 망을 보고 두 명이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것” 이라
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 답사에서는 일정에 차질을 빚

어 국제버스 탑승 시간표를 재차 확인한 사실을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정보기관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여행 일정을 자주 바꾼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하여 녹취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어 무고하려는 의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관한 증거 날조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가 허위의 진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묻자, “불법이지만 니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돼.”라고 말하는 등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수사기관인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조작’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 혹

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100차례 이상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해당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토대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로 하여금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서 및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이러한 허위의 공문서를 기초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을 발부 받았다면,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죄,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가.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자행하였으며,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대가로 이 사건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는 등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죄에 해당하고 이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심각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4.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7의 범죄혐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

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위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서의 공동정범 성립

이 사건 피고발인들 중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3은 이 사건 제보자가 위 피고발인8 내지 피고발인15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용받던 시절의 국정원장이었고, 피고발인4는 현재 국정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발인5 내지 피고발인7은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수사 및 사업 등의 기획, 부서별 조정,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8 내지 피고발인15 등에게 위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고발인1 내지 4는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피고발인5 내지 피고발인7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한 정보 수집에 사용된 불법 도·감청 장비 및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에 관한 위 법리와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7의 조직에서의 지위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이 비록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불법 사찰, 허위 진술서 작성 등 직접 전체 모의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정원의 보고·결재 라인을 통하여 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내지 피고발인7은 피고발인8 내지 피고발인15와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

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나. 범죄사실

피고발인 최 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이 사건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증 제4호증의2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참조).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제보자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의리를 강조하며 성매매를 권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사용할 돈을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 언론보도에서 ‘최씨’라고 지칭된 피고발인 최 은 파트너를 정해준 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추정되고 있고 그렇다면 위 사실은 심각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국정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를 이용하여, ①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를 위반하고, ② 본인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여 동조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V. 결론

국정원은 2017년 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 공익제보를 통하여 여전히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국가보안법 사건의 조작 기획 등을 자행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수사는 사찰 피해자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것임은 물론, 그 정보원의 사회적·경제적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간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원의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내사·수사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의 범위 등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감독 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 피고발인들이 지시한 내사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적법한 내사라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고발인들은 더이상 국가정보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헌법질서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위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락치'(정보원)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1)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예외 없는 대면조사, 2) 국정원과 각 관계자들의 자택, 국정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체(법인카드계좌, 직원들 사용 계좌) 등에 대한 전방위

적 압수수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헌법질서 유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증 거 자 료

- 1. 증 제1호증 진상조사보고서
- 1. 증 제2호증의1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 사찰 이어왔다”
- 1. 증 제2호증의2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 1. 증 제2호증의3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활동’ 녹음장비 주고, 주체사상도 직접교육”
- 1. 증 제2호증의4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버텨’민간인 사찰 자신
감”
- 1. 증 제2호증의5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프락치 그만두겠다 하니.. 국정원,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냐”
- 1. 증 제3호증 2019. 8. 26.자 연합뉴스 기사
 “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에 "제보로 국보법 위반 내사”
- 1. 증 제4호증의1 2019. 8. 27.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는 절대 자발적 제보자가 아니다”
- 1. 증 제4호증의2 2019. 8. 28.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 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 1. 증 제4호증의3 2019. 9. 2.자 머니투데이 기사

변호사 박 삼 성

변호사 서 채 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